

웰빙시대의 인삼산업,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 고품질 인삼 관리를 위한 인삼정책의 방향 -

박종서 과장
농림부 채소특작과장

일본은 인삼 특유의 쓴맛과 강한 향에 익숙지 않아 제품류 위주의 홍보를 하고 있고 미국은 한인중심의 소비에서 미국 현지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인삼을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유럽은 의약품 등록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편집자주>

1. 인삼산업의 현황

■ 인삼생산액은 농업총생산액의 1.7%이지만 단일품목으로 11위임

• 인삼생산액 : ('90) 1,978 → ('95) 2,839 → ('00) 3,728 → ('02) 5,550

• 홍삼 전매제 폐지('96) 이후 인삼재배면적 · 생산량 증가추세
- 생산량 : ('96) 10,147톤 → ('00) 13,664 → ('03) 15,172

■ 10a당 인삼소득(2002)은 쌀 소득의 3배 정도임

• 소득('02) : 인삼(6,863천원), 장미(6,000), 쌀(686), 노지고추(1,420)

■ 인삼의 유통구조는 원료삼별로 구분되어 유통

• 수삼은 계약재배(6년근), 포전 매매(4 · 5년근), 자가출하 형태로 유통

• 홍삼은 6년근 · 인삼공사 또는 인삼조합 중심, 백삼은 4 · 5년근 · 금산제조업체 중심으로 생산

■ 수삼으로 50%, 홍삼 · 태극 삼 · 백삼으로 50% 소비

• 수삼은 삼계탕재료, 백삼은 한약재 · 보약, 홍삼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

■ '96년이후 인삼 가공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인삼류 제조업체는 529여개소에 달하나 한국인삼공사등 10여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규모가 영세(평균자본금 328백만원)

• 인삼제품류 제조업체는 447개(2002), 제조품목수는 850여개정도임

■ 농산물 수출 중 인삼수출은 약 4% 정도임

• 인삼수출액은 총수출액 1,860백만불의 3.6%(67백만불)으로 '02년까지 감소하였으나 '0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섬

• 원형삼 중 홍삼이, 원형삼보다는 가공제품 수출이 증가추세임

■ 인삼 수입은 MMA물량 포함하여 약 200여톤에 이르고 있음

• 2003년도 인삼류 수입물량은 206톤(5,290천\$)으로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MMA수입물량 이행률도 높아지고 있음

2. 인삼산업의 국제경쟁력

▣ 생산경쟁력

- 인삼분야 경쟁상대국은 중국, 캐나다, 호주등이며, 중국은 세계인 삼생산량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타국가도 증가 추세임

- 재배규모가 경쟁국에 비해 영세하고 기계화가 되지 못하여 생산비가 많이 소요되며, 단위수량도 낮음

▣ 가격 경쟁력

- 홍콩에서 유통되고 있는 홍삼을 기준으로 한국산은 중국산 12배, 미국산 5배, 캐나다산 7배로 가격 경쟁력은 매우 낮음

구분	한국	캐나다	미국	중국
홍삼 6년근(\$/kg)	155.1	20.1	31.5	13.0
(지수)	(11.3)	(1.5)	(2.4)	(1.0)

▣ 품질경쟁력

- 고려인삼은 외국삼에 비해 약리활성을 나타내는 많은 종류(2~4 배)의 ginsenoside(인삼 사포닌)를 함유하고 있음.

- 외국 삼에 비해 각종 ginsenoside 함유량 및 조성 분포가 균등하고, 비사포닌계 생리활성 물질과 산성다당체 함량이 2~3배 높음.

▣ DDA 영향분석

- 선진국 수준의 관세감축과 TRQ물량 증량시 국내 인삼산업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국내소비는 '00-'02년 평균소비량(13,185톤)과 비슷(13,210)하나, 자급율 감소로 외국산 비율은 상승

- 중국산 수삼 수입 단가는 2,19\$(2,628원)으로 국내판매가격은 약 8,900원/kg정도이며, 국내산 인삼 농가판매가격(25,496원/kg)에 37%에 불과

3. 인삼산업 발전 중장기 추진계획

〈 목 표 〉

-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인삼 생산·유통으로 인삼종주국 위상 확보



- 단계별 고품질 원료삼 생산체계 확립
- 인삼 생산·가공·유통계열화 사업추진
- GAP 및 생산이력제 추진
- 외국삼 부정유통 근절
- 인삼류 검사강화 및 미검사품 유통방지
- 연구개발 체계정립 및 기능강화
- 차별화된 시장별 수출전략 추진

■ 단계별 고품질 원료삼 생산체계 확립

예정지 관리

- 예정지관리 표준지침
- 토양검정 및 수질분석
- 유기질비료 지원등

고품질
수삼 생산

고품질 재배

- 표준재배방법 보완
- 농약안전사용교육 및 농약사용지침 제작

수확전 안전성 조사

- 안정성 조사 실시
- 미등록 농약 기준설정

■ 인삼 생산-가공-유통계열 화 사업추진

▣ 연차적으로 계열화사업을 확대하여 전체 인삼생산의 40% 이상을 담당

• ('04) 500ha → ('07) 700 → ('10) 1,000(수확면적 2,500ha)

《사업기대효과》

① 고품질 우량 원료삼의 안정적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② 유통구조를 6~8단계에서 3~4 단계로 축소하여 유통비용 절감

③ 인삼브랜드화를 통한 외국삼 과의 차별화 실현 및 소비자신뢰확보등

■ GAP 및 생산이력제 추진

▣ GAP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 인삼GAP 표준재배법(SOP) 마련('04) 및 시범사업 실시('05~'06)

• 인삼계열화사업과 연계하여 인삼GAP 본격 실시('07년 이후)

▣ 생산이력제도로 고품질 안전인삼 생산체계 구축 마련(2010년까지)

• RFID칩등을 이용한 농산물이력 검색기술 체계화(2009년까지)

■ 외국삼 부정유통 근절

▣ 외국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원산지 단속 철저

▣ MMA물량 사후관리 철저(농협 중앙회)

• MMA물량에 대한 검사내역 공개 및 분기별 1회이상 재고조사

▣ 외국삼 식별능력 제고

• 최첨단 기기(NIRS, 전자코등)를 지속 도입하여 외국삼 식별능력을 제고

▣ 외국삼 불법유통방지를 위해 밀수 단속강화

• 밀수기관(관세청등) 밀수 단속 시 최대한 협조(인원, 원산지분석등)

■ 인삼류 검사강화 및 미검사 품 유통방지

▣ 미검사품 · 불합격품 유통방지 를 위한 인삼산업법 개정내용 홍보

• 2004.7.1일 시행한 법 개정내용 을 담은 홍보물 제작배포

▣ 진류농약검사 강화

• 검사품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잔류농약검사 확대실시

- 1단계(2004.7.1) : 수출품, 농협 생산품, 정관장 중심으로 확인검사

- 2단계(2005.1.1) : 모든 인삼류 를 대상으로 확인검사

• 철저한 인삼검사를 위해 필요 한 시설 · 장비 국고보조

▣ 검사제도 · 검사품에 대한 국내 홍보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좋은인

삼고르기등 전국적인 홍보 실시

•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검사마크를 개발하여 검사품을 홍보

▣ 미검사품, 불합격품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추진(농관원)

• 월 1회 단속을 기본으로 시 · 도 교차 단속

▣ 2006세계금산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금산시장 유통질서 회립

■ 연구개발 체계정립 및 기능 강화

▣ 기능별로 국가 연구사업 체계 확립

• 농진청 인삼약초과는 인삼재배, 품종육성, 병해충 방제등 기초 연구수행

- 음성에 인삼 · 약초시험장 건립 을 추진('04~'09)

• 농진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은 인삼의 신기능성물질 탐색 및 개발 등

• 한식연 인삼연구단은 인삼효능 을 특화시킨 인삼제품류 개발등

▣ 산학관연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지원

• 단기 기획연구과제 : 농안기금 용역사업 지원

• 중 · 장기 기획연구과제 : 농림 기술개발사업, 바이오그린21사업 지원

■ 국가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간의 협력연구 강화

- 민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과제를 통해 협력체계 구축

■ 차별화된 시장별 수출전략 추진

■ 수출 추진 목표 : '13년까지 150백만불 달성

■ 국가별 수출 전략 및 세부추진 방안

중화권 : 오인식해소, 수입의약품 등록 확대, 위조품 방지

- 중화권은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한 고려삼 승열작용 오인식 해소 우선
- 인삼캐릭터 해외상표등록을 통한 위조품 방지 ('03) 19개국 → ('04) 22
- 지속적인 중국내 고려홍삼에 대한 수입의약품으로 등록
 - 태극삼·백삼의 4·5년근 등록을 위한 자료수집 추진
 - 한류열풍을 이용한 TV광고, 한중 드라마 협찬 등을 이용한 홍보지속

기타국가: 인삼제품위주 및 새로운 수요창출 위한 홍보

- 일본은 인삼특유의 쓴맛과 강한 향에 익숙지 않아 제품류 위주 홍보
- 미국은 한인중심 소비에서 미국현지인에 대한 홍보 강화
- 유럽은 인삼을 의약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분류하므로 의약품등록 및 홍보 지속 추진

〈참 고〉

인삼산업법 개정 주요내용 요약

항 목	종 전	개정 내용
1. 인삼의 품질관리 및 불법유통 근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기준 미달제품은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 불응하는 경우 압류 ■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은 압류 또는 검사를 받도록 명함 ■ 처분명령 위반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미검사품 및 불합격품 판매자에 대한 별칙강화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인삼류 검사예외 제한	■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다른 제조자 또는 수집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인삼류 제품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 * 2006. 1. 1일부터 시행
4. 인삼검사 신청기한 조정	■ 인삼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관능검사 신청. 단, 농약잔류 검사등은 10일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능검사, 농약잔류검사 등 모든 검사를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 까지 신청 * 2005. 1. 1일부터 시행